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2018. 7. 1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직장 괴롭힘 개념 및 문제점	2
1. 직장 괴롭힘 개념 및 유형	2
2. 직장 괴롭힘의 문제점	3
III. 추진방향 및 과제	5
IV.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6
1. 직장 괴롭힘 인지·신고	6
2. 직장 괴롭힘 조사	8
3. 가해자 처벌	9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9
5. 사용자(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책임	11
6. 예방인프라 구축 및 교육 강화	12
V. 주요 분야별 추가대책	14
VI. 향후 추진계획	17
(별첨) 과제별 세부추진 일정	19

I. 추진배경

□ 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직장 괴롭힘 만연

- 최근 간호계 '태움' 관습, 지도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행위 등 직장 괴롭힘 문제 심화
-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EU 국가** (27개국 0.6(불가리아)~9.5%(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기업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직장 괴롭힘, '16년)
 - **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EU의 직장내 괴롭힘, '10년)
-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규정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년)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연간 4조 7천억원)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은 연간 4조 7,800억원*
 - * 연봉 3천만원 직원 기준 약 16만명 인건비에 해당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직장인 자살을 증가, 자녀 학교 괴롭힘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 직장 괴롭힘은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우울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자살율에 부정적 영향
-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위기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의 악순환 발생

⇒ 이번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18.7.5)」에 이은 두 번째 대책으로 추진

Ⅱ. 직장 괴롭힘 개념 및 문제점

1 직장 괴롭힘 개념 및 유형

□ 직장 괴롭힘 개념

-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17.11)

□ 직장 괴롭힘 유형

- 신체, 신분, 업무, 언어적 괴롭힘 등 다양한 괴롭힘 존재

구분	내용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인 폭력 및 위협, 위험성 있는 업무수행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비 미전달 등	
정신적 괴롭힘	신분적 괴롭힘	정당한 이유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형태 및 고용불안 조성, 부서 이동(좌천) 및 퇴사강요 등
	업무적 괴롭힘	CCTV 등 지나친 업무 감시, 성과 차별, 불공정 업무배정, 업무정보의 고의적인 누락, 성과 가로채기, 휴가제한 등
	언어적 괴롭힘	욕설 및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인 언어사용, 비하적·굴욕적인 언어사용 등
	개인적 괴롭힘	근거없는 비방·소문·누명, 대화 및 친목모임 제외(왕따), 회식·음주·흡연 강요, 외모·가정생활 등 지나친 간섭 등
기타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직장 괴롭힘 대상

- 전체 취업자(2,706만명)의 78.1%(2,114만명)가 직장 괴롭힘에 잠재적 노출

	직장 괴롭힘 대상	인원(%)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 간호사, 대학병원 의사 등 포함	2,019만명 (74.6%)
非근로자	9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96만명 (3.5%)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IT프로그래머, 학원강사, 방송작가, 연극 배우, 영화스텝, 독립PD, 간병인, 운동선수, 운동경기 보조원, 텔레마케터, AS기사, 검침원 등), 대학원생 조교, 실습생 등	
	자영업자(477만명), 무급가족종사자(115만명)	592만명 (21.9%)

* 전체 취업자수는 '18.5월 고용동향을 인용, 세부 분류별 규모와 괴롭힘 대상 비율 등은 타 통계자료('1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 등)를 인용하여 추정

2 직장 괴롭힘의 문제점

1) 인지·신고

- (개념 부재) 직장 괴롭힘 개념이 불명확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관행적 괴롭힘 지속
- (신고 적격 및 신원보호) 직접 피해자 이외에 동료 등 제3자는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자의 신원보호 장치가 미비
- (신고·상담절차 미비) 직장 괴롭힘 발생시 기업 내 신고·상담 절차가 미비하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창구도 불명확

2) 적발·조사

- (사실확인 곤란) 대부분 직장 괴롭힘 피해자는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에게 조사의무도 없음
- (국가기관 권한 제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이외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소관부처의 감독, 조사 절차 및 권한 제한

3) 가해자 처벌

- (불법행위 구성 곤란) 폭력, 성폭행 등 범죄 이외의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 일반적인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미해당
- (가해자 처벌 미흡) 직장 괴롭힘의 개념 부재 등으로 폭행 등이 동반된 직장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
- (행정제재 한계) 직장 괴롭힘을 이유로 한 행정제재 근거 부족

4) 피해자·신고자 보호

- (2차 피해 발생) 직장 괴롭힘 피해자·신고자는 직장에서 왕따 등 2차 피해를 받거나 징계, 퇴사 당하는 경우 발생
- (심리상담·치료 부족) 직장 괴롭힘 발생시 1차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체계 부족
- (소송부담) 직장 괴롭힘 피해자는 2차 피해(징계 등)에 따른 취소 소송 등 소송부담을 지고, 무고·명예훼손 등 역고소를 당할 위험

5) 사용자 등의 책임

- (사용자의 예방·조치의무 미흡) 직장 괴롭힘은 조직적,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예방의무, 책임제도 미흡
- (사용자 처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2차 피해 위험 증가

6) 예방·교육

- (예방인프라 미비)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표준안, 매뉴얼, 우수 사례집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미비
- (예방교육 부재) 직장 괴롭힘은 자살 등 사회문제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예방교육 부재
- (공정계약 문화 미정착) 비정규직, 문화·예술분야 등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장 괴롭힘에 더욱 취약
- (조기발견 한계) 직장 괴롭힘의 구체적인 형태 및 발생 가능성을 외부에서 예측할 수 있는 조사·연구가 부족하여 사전예방 한계

Ⅲ. 추진방향 및 과제

비전

전 국민의 평온한 삶을 책임지는 안심정부 구현

목표

직장 괴롭힘 없는 안락하고 쾌적한 직장문화 정착

전략

- ◆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신고·조사 확대
 - ◆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 사용자 등에 대한 책임성 강화
 - ◆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 ⇒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후 단계적으로 법제화 추진

단계

인지·신고	직장괴롭힘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사용자등 책임	예방·교육
-------	----------	--------	--------	---------	-------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괴롭힘 개념 규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괴롭힘 금지 의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등의 예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예방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괴롭힘 신고 당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의 직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등의 조치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괴롭힘 신고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의 건강진단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제재 (분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처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직장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에 직장 괴롭힘 신고 창구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근로 감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 노력

IV.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1. 직장 괴롭힘 인지·신고

①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 도입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 (개념 정의) 직장 등 일하는 장소에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장 괴롭힘 정의 마련

【개념(예시)】 사용자 또는 근로자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상자	상세 내용 (예시)
①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파견법상 사용자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 현장실습생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② 근로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¹⁾ + 파견법상 파견근로자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사용자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자영업자: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9개 업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문화·예술·체육계 프리랜서 등 9개 이외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함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 기타 비경제활동 인구 등: 현장실습생 등

⇒ 연구용역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18.12)·예술인복지법령('19) 개정*

* 기타 비근로자는 단계적으로 분야별 법령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검토

② 직장 괴롭힘 신고 당사자 확대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 (신고당사자 확대) 괴롭힘 피해자 이외에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적격 확대
- (신고자 신원보호) 신고자의 정보,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예술인복지법령 개정('19)

③ 직장 괴롭힘 신고 절차 마련 (고용부)

-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 대상* · 방법 ·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 폭행, 고용불안, 퇴사강요, 지나친 업무감시, 욕설 · 폭언, 인간관계 고립(왕따) 등
- (신고대응 부서 지정)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 괴롭힘 신고 · 대응부서 설치 또는 지정(노사협의회, 인사 · 감사부서 등 활용)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 개정('18.12)

④ 국가기관에 직장 괴롭힘 신고창구 일원화 (권익위, 고용부, 문화부)

- 노동 · 문화예술 · 체육 등 분야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 업무 추가
 - * 고용노동신고센터(고용부), 예술인신문고(문화부), 영화인신문고(문화부) 등
- 직장 괴롭힘 신고를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권익위, www.epeople.go.kr 내에 8월 중 구축예정)로 일원화

※ 일반사업장 내 사건 신고접수후 처리 절차(예시)

- (법령개정 전) 접수 후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사건해결 처리방안을 제시 및 이행지도 → 이후 취업규칙 개선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지도·권고
- (법령개정 후)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확인, 시정명령 및 불이행 처벌 → (필요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용자 처벌 등 조치

⇒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권익위)에 업종별 · 분야별 괴롭힘 신고 홈페이지 연계('18.12)

2. 직장 괴롭힘 조사

①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 의무화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사실 인지 또는 신고접수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하도록 의무화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 개정('18.12)

② 국가기관의 직권조사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 (직권조사)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인지·신고 접수한 경우 고용부가 직권조사 실시

- 직권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 부과(고용부 특별사법경찰)

- (현장조사·감사) 비근로자에 대해서는 업종별·분야별 협회 등을 통해 사실 조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조사 또는 감사 실시

⇒ 수시 직권조사 및 감사 등 실시('18.7~)

③ 국가기관의 건강진단 명령 (고용부)

-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필요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조치

*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 필요시 임시 건강진단명령 등 조치('18.7~)

3. 가해자 처벌

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인권침해) 금지의무 규정 마련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18.12) · 의료법('18.12) 개정

②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고용부, 법무부, 경찰청)

-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 시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거로 철저한 수사 등 엄정 대응

⇒ 가해자 엄정처벌(계속)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 직장 괴롭힘 피해자 또는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자 및 신고자에 대한 해고 또는 그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18.12) · 예술인복지법령('19) 개정

② 피해자 심리상담 등 지원 (고용부)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 및 해결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근로복지공단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연계·운영

⇒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18.7~)

③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고용부)

-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등*의 사망·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한 산재보상 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 9개업종), 현장실습생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관련 판단 매뉴얼 구체화('18.12)

④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법무부,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 (법률·소송 지원) 직장 괴롭힘 범죄피해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확대* 추진

* 직장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기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한정되던 것을 복직·보복소송 응소 등으로 확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개정('18.8.~)

- (입증부담 완화)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시 행정관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직장 괴롭힘 관련 직권조사, 감사, 현장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중 입증부담 완화

⇒ 자료제공('18.7~)

5. 사용자 등(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책임

① 사용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확대 (고용부)

- 사용자 등에 대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확대

*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법상 9개 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8.12)

②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 직장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제정('18.10)

⇒ 근로기준법('18.12)·예슬인복지법령('19) 개정

③ 사용자 처벌 신설 (고용부)

- (형사처벌·과태료) 사용자가 관련 법령 위반시 처벌기준 신설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신설
(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예: 500만원) 신설

⇒ 근로기준법 개정('18.12)

④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부)

-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18.8)

6.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강화

① 자율적 예방 인프라 구축 (고용부)

- (취업규칙 강화)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사용자 및 노동자의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예방 및 해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배포
 - * 사용자 및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괴롭힘 예방·해결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고충처리 시스템 등
 - (매뉴얼 제작·배포) 사업장 단위에서 참조하여 즉시 직장 괴롭힘 예방·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 * 주요내용: 괴롭힘 정의, 유형 및 사례,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 괴롭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방안,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구제방법 등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장 실태에 맞는 자율적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또는 직장 괴롭힘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운영,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노·사 동수로 괴롭힘 조사단 구성 등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장 괴롭힘 자율 점검 및 지원
 - 직장 괴롭힘 정책 안내·홍보, 모범사례 전파, 자료 배포
- ⇒ 컨설팅 지원('18.7~), 기타 후속조치('18.12)

② 직장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고용부)

-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표준안 및 동영상 제작·배포
- ⇒ 근로기준법 개정('18.12)

③ 건전한 직장 문화 정착 노력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 (예방 캠페인)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사업장을 발굴하여 '상호존중 일터'로 인증
 - 우수사업장 선정 및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검토
- (분야별 TF운영) 직장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를 대상으로 TF 수시 운영
 - 정기적 논의를 통해 분야 특성별 직장 괴롭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집중 지원
 - * (예시) 최근 병원업종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병원 업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T/F 구성
- (노사정선언)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가칭)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추진

⇒ 캠페인, TF 운영("18.7~), 노사정 선언("18.12)

④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 노력 (고용부, 복지부)

- 노동자 정신건강 연구 확대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 과로사 예방 등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실시
 - * ① 근로자 정신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②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③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평가제도 마련 연구 등

⇒ 노동자 정신건강 연구("18.7)

V. 주요 분야별 추가대책

- ◆ 직장 괴롭힘에 대해 취약한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대책 이외에 분야별 자격제한 및 예방인프라 구축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
- ⇒ '교육부문 갑질행위 근절대책 발표('18.9월)' 등 추가대책 지속 검토

1 의료 분야 (복지부)

□ 직장 괴롭힘 신고·조사

-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계속)
- 필요시 피해상황에 따라 노동청·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연계 지원

□ 가해자 제재 및 사용자 등 책임

- 의료인 간 성폭력·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시 면허 정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의료법 개정) 마련 추진('18.12)

□ 피해자 지원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안내('18.10)
- * 사전 예방교육, 신고·상담창구 안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제공('19.1~)

□ 교육 및 예방시스템 구축

- 의료인 양성·보수 교육에 인권침해, 성폭력 및 직장 괴롭힘 방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고('18.12)
-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18.12)
- 인권침해 대응체계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19)

2 교육 분야 (교육부)

※ 교육부문 갑질 근절 대책으로 별도 추진 예정

□ 직장 괴롭힘 신고·조사

-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권리강화를 위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계속)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노웅래,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 가해자 제재 및 사용자등 책임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 해당 연구과제 중지 등 제재 방안 마련('18.12, 교육부·과기부)

□ 피해자 지원

- 대학 내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및 고충처리를 상담·해결(계속)
 - 필요시 대학 내 심리상담 제공 및 법률·심리치료 등 외부 전문기관 연계
-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직장 괴롭힘 피해교원의 상담·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지속 추진(계속)

□ 교육 및 예방시스템 구축

-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 및 표준복무협약서(가칭)」 개발·보급('18.12)하고 대학별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확대 권고('18.7~)

- 대학 내 인권·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강화*('18.7~)

* 폭력 예방교육실적을 대학정보공시에 반영

- 중·고등학교의 교수 학습자료 보급 등을 통하여 직장 괴롭힘 및 공정한 직장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18.7~)

* 건전한 근로문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등

- 직장 괴롭힘을 포함한 초·중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별 실태분석* 및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18.12)

* 학교급별, 침해대상별, 침해행위별 현황 및 특징 분석

** 관리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이외에 교원 상호간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포함

3 문화예술·체육 분야 [문화부]

□ 직장 괴롭힘 신고·조사

-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괴롭힘 신고창구 확대('19.1~)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가수협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예술인신문고 등
-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 강화('19.1~)

□ 가해자 제재 및 사용자등 책임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불공정행위·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 확정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19)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19.1)
- 체육분야 종사자가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시 지도자 자격취소('18.7)

□ 피해자 지원

- 폭행,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심리상담 지원('19.1~)
 -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법률전문가 상담 지원, 영화분야 성폭력행위 등 발생시 소송비, 변호사 선임료 등 지원
-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운동선수 등에게 의료비 지원 추진('19.1~)

□ 교육 및 예방시스템 구축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서면계약 매뉴얼 개발, 서면계약 체결여부 조사 등을 통해 공정계약체결 문화조성('19.1~)
 - 표준계약서 활용시 사회보험료 50%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선수 및 지도자 등록시 스포츠인권 교육 의무화, 프로스포츠 윤리 교육 시행('18.12)
- 문화예술·체육분야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19~), 체육계 선수·지도자('20~) 실태조사

VI. 향후 추진계획

1.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① 법령개정 전 실행력 담보

- '18.8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하여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바로 실시
 - 직장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사정 협의와 사업장의 자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은 즉시 실시
- '18.10월 합동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마련·배포하여 취업규칙(고용부)·협회내규(문화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반영,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이 실행되도록 지도·권고
 - * 직장 괴롭힘 개념·유형, 사례, 판단기준, 괴롭힘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사용자의 책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등 포함

②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예산반영 등('18.12월)

-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각 부처별 법령 및 규정 제·개정
 - (법률: 5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예술인복지법('19)
 - (대통령령: 1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 (규정·지침: 4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취업규칙 표준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및 시도 체육회 지침
- 피해자 신고상담, 의료비, 소송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범정부 갑질신고 센터와 분야별 인터넷 신고시스템 연계
- 추후 분야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대책 지속 검토
 - * '교육부문 갑질행위 근절대책 발표('18.9월)' 등

③ 국회논의* 등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등 제정 검토

- *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 6개<(특별법) 강병원, 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한정애, 이인영, 윤종오, 강병원 의원> 국회 계류중

2. 민간부문 기관간 갑질 근절

-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18.12)
 -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하도급, 기술탈취 방지
 -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근절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 상대 과소 제작비 지급 등 근절

별첨

과제별 세부추진 일정

단계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1. 직장 괴롭힘 인지·신고	1-1.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 도입	직장 괴롭힘 정의 마련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발표	'18.10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근로자 관련 법령 우선 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18.12	고용부	-	
		예술인 관련 법령 우선 개정 * 예술인복지법령 개정	'19~	문화부	-	
	1-2. 직장 괴롭힘 신고 당사자 확대	신고적격 확대, 신고활성화 제도기반 마련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18.10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예술인 신고자 신원보호 근거규정 신설 * 예술인복지법령 근거규정 신설	'19	문화부	-	
	1-3. 직장 괴롭힘 신고절차 마련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 의무화 * 근로기준법 개정	'18.12	고용부	-	
		직장 괴롭힘 신고·대응부서 설치·지정 *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18.10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1-4. 국가기관에 직장 괴롭힘 신고창구 설치	인터넷 신고시스템 연계	'18.12	권익위	고용부 문화부	
	2. 직장 괴롭힘 조사	2-1.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 의무화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18.10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근로기준법 개정	'18.12	고용부	-
2-2. 국가기관 직권조사		직장 괴롭힘 인지·신고접수시 직권조사 실시, 필요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18.7~	고용부	-	
		업종별·분야별 협회 등을 통해 사실확인,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조사·감사 실시	'18.7	교육부 문화부	-	
2-3. 국가기관의 건강진단 명령		건강장애 발생 사업장 대상 임시건강진단 명령	'18.7~	고용부	-	
3. 가해자 처벌	3-1.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18.10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근로기준법 개정	'18.12	고용부	-	
		의료법 개정	'18.12	복지부	-	
	3-2.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관련 범행시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	계속	법무부 경찰청 고용부	-	

단계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1.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18.10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근로기준법 개정	'18.12	고용부	
		예술인복지법령 개정	'19~	문화부	
	4-2.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전문가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18.7~	고용부	-
	4-3.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관련 판단 매뉴얼 구체화	'18.12	고용부	-
	4-4.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개정	'18.8~	법무부	-
정보공개 청구시 자료제공		'18.7~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5. 사용자 책임	5-1. 사용자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8.12	고용부	-
	5-2. 사용자 조치의무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18.10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근로기준법 개정	'18.12	고용부	-
		예술인복지법령 개정	'19~	문화부	-
	5-3. 사용자 처벌 신설	법령위반시 처벌기준 신설 * 근로기준법 개정	'18.12	고용부	-
5-4. 특별근로 감독 실시	근로감독관 특별근로감독 실시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18.8	고용부	-	
6.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강화	6-1. 자율적 예방 인프라 구축	직장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강화 *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배포	'18.12	고용부	-
		직장괴롭힘 예방·조치 매뉴얼,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18.12	고용부	-
		맞춤형 컨설팅 지원	'18.7~	고용부	-
		근로조건 자율점검 및 지원	'18.12	고용부	-
	6-2. 직장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사용자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근로기준법 개정	'18.12	고용부	-
		예방교육 표준안 및 동영상 제작·배포	'18.12	고용부	-

단계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6-3.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노력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 사업장 ‘상호 존중 일터’ 인증		‘18.7~	고용부	-	
		분야별 TF 운영	‘18.7~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문화부	-	
		‘(가칭)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추진	‘18.12	고용부	-	
	6-4.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 노력	노동자 정신건강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18.7	고용부	복지부	
7. 주요 분야별 추가 대책	7-1. 의료분야	의사협회·간호협회 신고상담센터 운영	계속	복지부		
		면허정지 근거법률 마련(의료법 개정) 인권침해 대응체계 평가반영	‘19			
		직무스트레스 상담, 치유프로그램 제공	‘19.1~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강화	‘18.12			
	7-2. 교육분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고등교육법 개정)	계속	교육부		
		괴롭힘 행위로 징계시 국가연구개발 지원 중지 등 제재	‘18.12	과기부		교육부
		대학 내 인권센터를 통한 상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치유	계속	교육부		
		대학원생 조교 복무가이드라인 및 표준 복무협약서 개발, 학생권리장전 확대	‘18.12			
		중고등 학교 직장괴롭힘 방지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정	‘18.10~			
	7-3. 문화예술, 체육분야	문화예술, 체육분야 신고창구 확대	‘19.1~	문화부		
		문화예술분야 기금지원사업 배제 체육 지도자 자격취소	‘18.7~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명단공표 근거마련(예술인복지법 개정)	‘19.1			
문화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운동선수 의료비 지원		‘19.1~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확대		‘18.12				